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지침

제　　정 2019. 5.17. 산림청 고시 제2019-34호
일부개정 2026. 5. 7. 산림청 고시 제2026-4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제2항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시행기관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시험시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격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 응시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본부, 출제·채점장, 인쇄장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시험문제 출제·채점 등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결정·공고 등에 관한 사항
6. 수험상이자,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의 세부적인 사

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 제2조에 따른 시험시행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임무수행 및 비밀 누설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를 징구(徵求)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